

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| 부부공동명의 변경 안내문

「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」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

고객님께서 계약하신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(당첨자 발표일 : 2023.04.25)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단지입니다.

단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LH 전매 동의하에 부부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부부공동명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일정에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전매제한 기간 내 부부공동명의 변경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오니 부부공동명의 변경이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와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기간에 방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부부공동명의 변경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
| 구분(절차) | 접수처 | 구비서류 |
|---|--|---|
| 1. 방문예약 | ·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· 예약 기간 : 2023.06.12(월) 12:00 ~ 2023.06.18(일) 23:59 | |
| 2. 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 (부산광역시 강서구청) | ·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(☎051-970-4755) (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동편 2층 토지정보과) | · 양도인(계약자) / 양수인(수증인) 공통 ① 증여계약서 3부(본인작성) -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② 공급계약서(아파트,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서) ③ 신분증(양도인/양수인) ④ 인감도장(양도인 / 양수인) |
| |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부산 강서구청에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후 견본주택 방문 | |
| 3. 부부공동명의 변경 서류접수 사전예약 후 방문 (견본주택) | 장소 ·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견본주택 (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7-6번지) | ▶ 양도인 / 양수인 공통 ① 검인 증여계약서(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검인 후) ② 공급계약서(아파트,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서) ③ 전매신청서(견본주택 양식 비치) ▶ 양도인(계약자)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('본인' 발급분) - 수증인(배우자) 인적사항 기재 ② 주민등록등본 1부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'상세')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'상세') ④ 신분증 ⑤ 인감도장 ※ 양도인은 반드시 본인 참석, 위임불가(불참 시 명의변경 불가) ▶ 양수인(배우자) ① 일반 인감증명서 2부('본인' 발급분) ②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'상세') - 배우자(양수인) 분리세대일 경우 ③ 신분증 ④ 인감도장 ▶ 양수인 대리인 참석 시 ① 양수인 구비서류 일체 ②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용 1부('본인' 발급분) ③ 대리인 신분증 ※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 및 일반 인감증명서 1부 ※ 서류 미비 시 부부공동명의 변경 접수 불가 |
| | 신청방법 · 홈페이지 사전예약 신청 후 방문 ※ 해당기간 내 미신청 시 공동명의 진행 불가합니다. · 진행일시 : 2023.06.15(목)~2023.06.19(월) / 5일간 (10:00 ~ 17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 | |
| 4. LH서류심사 후 전매동의서 발급 (약 3~4주 소요) [당사 수령] | ·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로 부부공동명의 신청 서류 제출 →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전매 사유 심사 및 서류검토 후 전매동의서 발급 ※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은 사업주체가 일괄 접수하는 것으로 승인완료 시까지 약 3~4주 이상 소요 예정입니다. ※ 부부공동명의 신청 접수 시 제출한 계약자의 공급계약서는 사업주체에서 보관하며 권리의무승계 완료 후 제출합니다. | |
| 5. 권리의무 승계작성 및 공급계약서 수령 (견본주택) | · 공급계약서 권리의무 승계작성 ※ 부부공동명의 변경 신청 접수로부터 최종 전매승인까지는 약 1개월 가량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부부공동명의 변경 신청 시 양도인(계약자) 본인 필히 방문 - 대리인 불가(단, 양수인은 대리인 방문 가능) | |
| 6. 증여세 신고 | ·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※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세금에 대하여 신고, 납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. | |

■ 유의사항(필독)

※ 부부공동명의 변경은 현장 상황으로 인해 예약하신 시간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※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부부공동명의로만 변경 가능하며,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하거나 부모, 형제 등과의 공동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.

※ 전매제한 기간에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다시 단독명의로 변경하시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.

※ 모든 구비서류는 **최근 1개월 이내 '본인' 발급분** 및 원본에 한해서 인정됩니다.

※ LH 전매동의 신청(LH제출)시 및 권리의무 승계 작성(당사 보관)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각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세금에 대하여 신고, 납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.

※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중도금 대출 실행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(양도인(계약자) 및 양수인(배우자) 중 1인이라도 중도금 대출 심사 부적격시 중도금 대출 실행 불가)

※ 부부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대출, 세금관련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양도인(계약자) 본인에게 있으며,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증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당사에서는 세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)

※ 금회 부부공동명의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, 추후 중도금 대출 실행 이후 변경시에는 대출 승계 절차 이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.